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5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3.

다. 회 부 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500억원 이상,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Ⅲ.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 총사업비 <u>500억원</u>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u>300억원</u> 이상 - 기타 재정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u>500억원</u>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 총사업비 <u>1,000억원</u>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u>500억원</u> 이상 - 기타 재정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u>800억원</u> 이상 - 인구감소지역은 총사업비 <u>1,500억원</u>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u>800억원</u> 이상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그리고 기타 재정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에서 8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8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³⁾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하여 2024년의 경우 명목GDP는 591조원에서 2,549조원으로 약 4.3배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규모(본예산 총지출 기준)도 145조원에서 657조원으로 약 4.5배 증가하였으며,⁴⁾ 물가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1999년과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비교하여 2024년에는 1.8배 상승하였음.⁵⁾

[GDP(명목)·총지출 비교]

(단위: 조원)

구분	1999년	2024년	비고
GDP(명목)	591	2,549	약 4.3배 증가
총지출 (본예산 기준)	145	657	약 4.5배 증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계정(기준연도 2020년), 열린재정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며,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⁶⁾

4) 국가통계포털(KOSIS), 기획재정부, 2024. 7.

5)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1.76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를 기록함(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2025년 6월 기준)]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품질저하 또는 기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17.6개월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인 9개월⁷⁾을 8개월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

(단위: 건, 개월)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조사완료 사업수	34	13	28	16	8	19.8
조사기간	19.3	16.2	16.3	18.1	15.6	17.6

주 1) 연도는 대상 선정 시점 기준

2) 자료는 2025년 3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물가상승이나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

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129개) 중 개정안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적용 시 1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데, 이들 사업 중 3개(총 사업비 1,932억원)의 사업은 AHP⁸⁾가 0.5 이하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사업 중 개정안 적용시 제외 사업 현황]

조사완료 사업	개정안 적용시 제외 사업	
		AHP 0.5 이하 사업
129개	17개	3개
(총사업비 1,255,261억원)	(총사업비 1조 4,612억원)	(총사업비 1,932억원)

주 1) 총사업비는 부처요구 기준

2) R&D 사업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2025.3.)

이와 같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예산 낭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8)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란 종합평가기법으로서,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시키는 기법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미시행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함.(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기획재정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규모
2005	3	0.7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2024	39	17.4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로 최근 5년간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단위: 건, 조원, %)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건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모			
	전체	SOC	R&D	기타	전체	SOC	R&D	기타
2020	52	10 (19.2)	37 (71.2)	5 (9.6)	31.4	5 (15.9)	25.5 (81.2)	1 (3.2)
2021	60	21 (35.0)	23 (38.3)	16 (26.7)	74.9	26.9 (35.9)	20.5 (27.3)	27.6 (3.7)
2022	40	12 (30.0)	16 (40.0)	12 (30.0)	28.5	10.4 (36.5)	9.1 (32.1)	9.0 (31.5)
2023	44	23 (52.3)	12 (27.3)	9 (20.5)	44.3	31.1 (70.3)	7.9 (17.9)	5.2 (11.8)
2024	33	10 (30.3)	11 (33.3)	12 (36.4)	25.1	15.3 (61.0)	6.0 (23.9)	3.8 (15.1)

자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 제기된 반면, 재정준칙과의 연계 처리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되었음.⁹⁾ 그리고 R&D 사업의 경우,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9월 25일에 의결되었음.

둘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성장촉진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한 다수의 지역들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기지역 유형]

구분	근거법령	지정기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

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4. 11. 27.),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5. 2. 1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2025. 9. 1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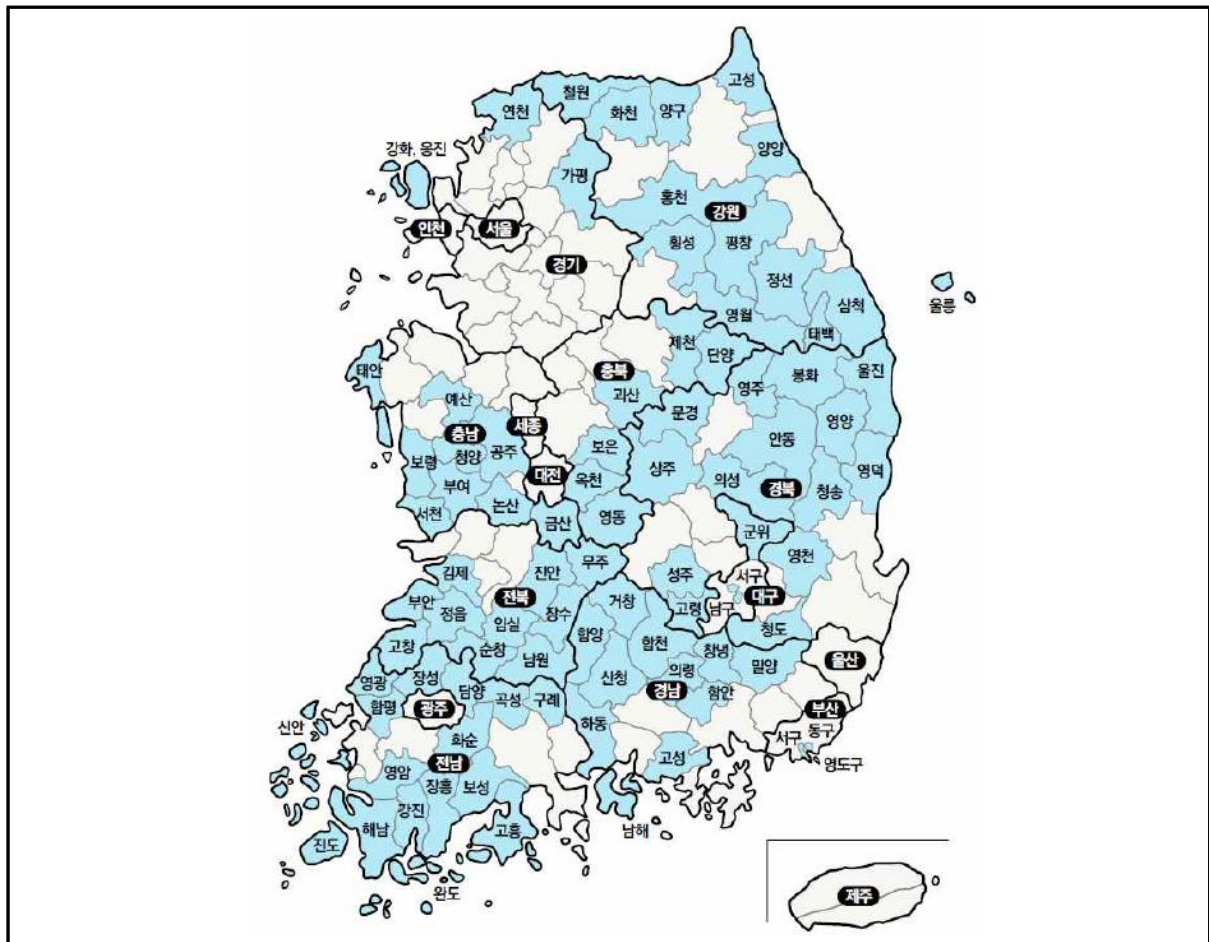
구분	근거법령	지정기준
		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

셋째,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800억원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상향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기준금액이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8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89개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다수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되어 추가적으로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적용받게 될 수 있음.¹⁰⁾

10)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사업 여건 변화, 사전 검증절차,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SOC 분야에 한정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따른 별도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사업 유형·분야별로 관리 중인 현행 예타 체계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2025년 6월 기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총사업비가 1천억원----- -----500억원----- . ----- -----재정지출이 800억원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가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 ----- -----제7항----- ----- -----. ③ (현행과 같음)
--	---

문 의 처
02)6788-5155